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국민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중 기여금 외에 부담금까지 근로자의 납부를 허용하면서 체납 기한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212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가산 이자 적용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정산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근로자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적용방법 규정(제24조)

근로자가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자로부터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사실을 공단에 지체없이 알리도록 함.

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정산방법 개선(제45조)

소득활동에 따라 정산차액 충당 시 공제 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액의 20%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기여금의 개별 납부)”를 “(기여금 등의 개별 납부 및 반환)”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건강보험공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 “기여금”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7조제4항의 이자는 체납 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여금 및 부담금의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의 납부를 받으면 그 내용을 공단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4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연금을 지급할 때 정산차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 범위에 대하여는 법 제59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다만, 연금을 지급하는 때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달에 지급할 연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0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3항) 중 “전문위원회는”을 “법 제103조의3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으로, 같은 항 및 제3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제1호”를 각각 “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6항) 중 “제4항제3호”를 “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7항) 중 “제4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입증자료란 기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기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혼인일·입양일 등 가족관계 성립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각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별표 2의2 제2호다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

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어업허가 등에 관한 자료”를 “어업허가 등에 관한 자료,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허가 등에 관한 자료”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너목 중 “어업허가 등에 관한 자료”를 “어업허가 등에 관한 자료,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허가 등에 관한 자료”로 하고, 같은 호 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
중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선고·면책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사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5조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다음달에 지급하는 연금액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기여금의 개별 납부) ① <u>근로자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 에 따라 체납 사실이 통지된 체 납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체납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부 담해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부터 10년 이내 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낼 수 있다.</u> ② <u>건강보험공단이 법 제88조제 2항 및 제95조제4항에 따라 체 납 사실이 통지된 체납 월의 다 음 달부터 발생하는 체납 연금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 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하 면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u>	제24조(기여금 등의 개별 납부 및 반환) ① <u>법 제17조제4항의 이 자는 체납 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여금 및 부담 금의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 는 달까지의 개월 수를 기준으 로 산정하며, 이자율은 1년 만 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 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 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 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 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u>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 ----- ----- -----

하여 낸 기여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제73조 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① ~
④ (생 략)

<신 설>

제66조(매각 대행의 의뢰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6항에 따라 압류 재산의 매각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 기여금 및 부담금-----

---. -----

-----.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의 납부를 받으면 그 내용을 공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연금을 지급할 때 정산차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 범위에 대하여는 법 제59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다만, 연금을 지급하는 때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달에 지급할 연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

제66조(매각 대행의 의뢰 등)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 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80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0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삭제>

<삭제>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

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기금 투자 기준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금 투자 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투자정책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주권 행사의 원칙·기준·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02조제4항에 따른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지배구조 등의 고려
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
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국민연금기금수탁
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
장 또는 국민연금기금수탁
자책임전문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
·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성과
보상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 위험관리에 관
한 사항

나. 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보
상에 관한 사항

다. 기금 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위험관리
· 성과보상에 관하여 운용
위원회의 위원장, 국민연
금기금위험관리·성과보
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
는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

· 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구하는 사
항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생략)

⑤ 제4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4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03조의3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 제2항제1호-----
-----.

② (현행 제4항과 같음)

③ 제2항제1호-----
-----.

④ 제2항제3호-----
-----.

⑤ -----
----- 제2항제1호-----
-----.

⑥ ----- 제5항-----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604